

2026년 『교직원단체상해보험』 가이드라인

I. 가입기간: 2026. 11. 7. 00:00부터 2027. 11. 6. 24:00까지

II. 가입대상 : 전 교직원

구 분	계	남 자	여 자	평균보험연령
인 원	795	311	484	남: 49세 여: 42세

※ 계약 체결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III. 단체보험 보장범위

1. 담보 및 가입금액

구 분	보장금액	담보내용
상해사망	1억원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시 지급(질병 및 자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	1억원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대로 지급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입원/통원)	3천만원 /15만원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상세: 하단 참조
상해 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통원)	3천만원 /15만원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중증 비급여 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상세: 하단 참조
상해 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통원)	6백만원 /15만원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중증 비급여 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상세: 하단 참조
뇌졸중 진단비	1천만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

※ 한방·치과 비급여 입원의료비 보장

※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5세대 전환에 따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

※ 위 내용은 요약 및 일부 발체 부분이며, 모든 보장내용은 감독기관 기준 및 약관에 따릅니다.

※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생애 최초 1회만 지급

2. 보장범위

가. 사 망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업무중, 업무외 관계없이 24시간 보장

○ 사망 면책 조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기타 약관참조

나.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국내 적용)

1) 보장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3천만원 (통원 15만원 한도)

구 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외래+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품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제외, 국내 적용)

1) 보장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3천만원 (통원 15만원 한도)
비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6백만원 (통원 15만원 한도)

구 분		보상금액
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 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비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의료법 제32호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2)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중증 상해 비급여)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중증 상해 비급여)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의료비의 제외 사항(표준약관 및 보험사 기본면책사항 적용)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사고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F04~F99) / 비만(E66)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뇨기계 장애(N39, R32)
- 직장 또는 향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 ~ K62)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단, 혈액에 의한 감염일 경우 제외)
- 영양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고단위영양제 투여 등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건강진단, 예방접종, 인공유산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인한 경우(하단별표 참조)
-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 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
-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침약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 실손의료비의 보장 여부는 해당 약관에 따름
- 기타사항은 감독관청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
- 의료비 보장보험의 경우 실손보험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금지.

라. 면책기간 :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마. 보험기간 중 입,퇴사자 등의 관리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신분변동사항 통보 : 수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계산하되, 보험료 정산은 연정산으로 한다.